

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2. 5. 31 선고 2020가단148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, C

피 고 D

변 론 종 결 2022. 4. 19.

판 결 선 고 2022. 5. 31.

주 문

1. 피고와 E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5 지분에 관하여 1985. 6. 5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E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5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18. 10. 4. 접수 제103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정지원

별지